

국립국어원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23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(개인 자격 심사)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원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2023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(개인자격심사)를 안내해 드리니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행정 착오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신청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2023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(개인자격심사) 일정
 - 공고: 2023. 1. 27.(금)
 - *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(<https://kteacher.korean.go.kr>)
 - 서류 접수: 2023. 2. 28.(화) 9시 ~ 2023. 3. 10.(금) 8시
 - 합격자 발표: 2023. 3. 10.(금)
 - *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(<https://kteacher.korean.go.kr>)에서 심사 결과 확인
 - 유의 사항
 -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(실제 운영한 교과목명)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.
 - 교육기관이 발급한 **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(실제 운영한 교과목명)이 100% 일치**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.
 - *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.
3.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수강생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(실제 운영한 교과목명)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 촉박한 심사 일정 등으로 접수된 서류상의 미심사 교과목명, 교과목명 잘못 표기, 누락 등 기관 담당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은 '[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\(https://kteacher.korean.go.kr\)](https://kteacher.korean.go.kr)- 교육기관 - 학위/비학위 과정 - 해당 교육기관명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4. 아울러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과 다른 교과목명으로 운영했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'교과목 확인 심사'를 다시 받으셔서 귀 기관의 수강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5.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(개인자격심사)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'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 02-2669-9671~7'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2023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(개인 자격 심사) 계획 공고문 1부. 끝.

국립국어원장



수신자 한국어교육 교육기관

공무직 천여름 학예연구관 홍혜진 한국어진흥과장 전결 2023. 1. 30. 윤재무

협조자

시행 한국어진흥과-118 (2023. 1. 30.) 접수

우 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/ <http://www.korean.go.kr>

전화번호 02-2669-9675 팩스번호 02-2669-9747 / yeoreum@korea.kr / 대국민 공개